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6929 발의연월일: 2022. 8. 19.

발 의 자:정필모·민형배·김두관

양이원영 · 고민정 · 김영주

이형석 · 조승래 · 안규백

김민기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건(2019. 5. 10.)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의 지시·감독 시 면허 미보유자의 원자로 운전이 가능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개정(2020. 12. 22.)된 바 있음.

그러나 현행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의 경우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,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한 실정임.

또한, 현행법상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보유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.

이에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 면허 취득·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하고 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하며 면허 취소·정지 및 벌칙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, 원자로조종감독자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원자로 조종에 관한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운전원 면허 취득·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 신설(안 제87조의2 신설)
 - 1) 면허 취득·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함.
 - 2)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함.
- 나.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 강화(안 제88조의2 신설)
 - 1) 면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면허소지자가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면허를 갱신하도록 함.
 - 2)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을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.
 - 3) 법정 보수교육 수료 내역을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.
 - 4)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함.
- 다. 면허 취소·정지 및 벌칙 규정 정비(안 제88조의3 신설, 법 제86조 및 제117조 개정)

- 1)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함.
- 2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갱신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,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함.

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6조제1항제1호 중 "받은"을 "받거나 갱신한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87조의2(원자로조종면허에 필요한 신체검사) ① 제8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면허(이하 "원자로조종면허"라 한다)를 받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위원 회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 - 1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가목의 의원
 - 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
 - 3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
 -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, 합격기준,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88조의 제목 "(면허증)"을 "(면허증의 교부 등)"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1항 중 "면허시험"을 "면허시험 및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(원자로조종면허에 한한다)"로 한다.

제8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 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 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8장에 제88조의2 및 제8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88조의2(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 및 갱신) ①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날(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- 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.
 - ③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.
 - 1. 원자로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원자로의 운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
 - 2. 원자로조종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

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

- 3.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을 것
- 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면허가 정지된 때로부터 3년 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.
- 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88조의3(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) 누구든지 제88조에 따른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111조제1항제10호 중 "제88조제1항"을 "제88조"로, "교부"를 "교부 및 재교부, 제88조의2에 따른 면허의 갱신"으로 한다.
- 제117조제6호 중 "본문·제94조·제96조"를 "본문·제86조제1항제1호 ·제94조·제96조"로 한다.
- 제118조제2호 중 "·제40조제1항·제65조의2제1항·제68조제1항·제8 8조제2항"을 "·제40조제1항·제65조의2제1항·제68조제1항·제88조의 3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원자로조종면허 갱신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취득한 원자로조종면허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벌칙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6조(면허의 취소 등) ① 위원	제86조(면허의 취소 등) ①
회는 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	
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	
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	
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	
하여 그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.	
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	
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	
하여야 한다.	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	1
법으로 면허를 <u>받은</u> 때	<u>받거나 갱신한</u> 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때	3. 제88조의3을 위반하여 면허
	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었
	<u>을 때</u>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87조의2(원자로조종면허에 필
	요한 신체검사) ① 제84조제2항
	제1호 및 제2호의 면허(이하
	"원자로조종면허"라 한다)를 받
	으려고 하거나 제88조의2에 따
	라 원자로조종면허를 갱신하려

제88조(면허증) ① 위원회는 제87 조에 따른 <u>면허시험</u>에 합격한 사람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 받은 사람은 이를 다른 사람에 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행사하 여서는 아니 된다. 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실 시하는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체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 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.
- 1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의원
- 2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
- 3.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
-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시기, 합격기준, 검사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제88조(면허증의 교부 등) ① -------- 면허시험 및 제87조의 2에 따른 신체검사(원자로조종 면허에 한한다)-----

②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 었을 때 또는 면허증의 기재사 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총리령 <신 설>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증의 재교부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88조의2(원자로조종면허의 유 효기간 및 갱신) ① 원자로조종 면허의 유효기간은 원자로조종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(면허를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 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- ②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후에도 그 면허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사람은 면허의 유효기간만료 전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허를 갱신하여 발급하여야 한다.
- 1. 원자로조종면허증을 발급받으는 날로부터 원자로의 운전업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- 바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경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
- 2. 원자로조종면허를 발급받은
 날로부터 제106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2회 이상 받았을 것
- 3. 제87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 에 합격하였을 것
- ④ 원자로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2항에 따라 그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다.
- ⑤ 제4항에 따라 원자로조종면 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은 면 허가 정지된 때로부터 3년 내에 면허의 갱신을 받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 다.
- ⑥ 위원회는 원자로조종면허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경우 그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그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에 관한

<신 설>

제111조(권한의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, 통제기술원, 안전재단,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수 있다.

- 1. ~ 9. (생략)
- 10. <u>제88조제1항</u>에 따른 면허증의 <u>교부</u>, 제93조에 따른 핵물질 등의 수용·양도, 제98조제 1항 및 제104조제1항에 따른 보고, 제107조에 따른 수출입과 관련된 업무
- 11. ~ 16. (생 략)
- ② ~ ⑤ (생 략)
- 제117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

내용을 동시하여야 한나.
제88조의3(면허증의 대여 등 금
지) 누구든지 제88조에 따른 면
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
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
<u>아니 된다.</u>
제111조(권한의 위탁) ①
· 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<u>제88조</u>
<u>교부 및 재교부, 제88</u> 조의2
에 따른 면허의 갱신
11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17조(벌칙)

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제70조제1항 및 제2항・제77
 조제2항・제77조의3제2항・제84조제1항 본문・제94조・ 제96조 또는 제97조를 위반한 자
- 7. (생략)
- 제118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(생략)
 - 2. 제23조제1항(제3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2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(제3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·제40조제1항 ·제65조의2제1항·제68조제 1항·제88조제2항 또는 제102조를 위반한 자

3. ~ 6. (생략)

<u>.</u>
1. ~ 5. (현행과 같음)
6
<u>본문 · 제86조제1</u>
<u>항제1호·제94조·제96조</u>
7. (현행과 같음)
데118조(벌칙)
1. (현행과 같음)
2
<u>·</u> 제40조제1항
<u>• 제65조의2제1항 • 제68조제</u>
<u>1항ㆍ제88조의3</u>
3. ~ 6. (현행과 같음)